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년 12월 일
제 출 자 : 성주군수

1. 개정이유

○ 주택분 재산세 세율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법률 제9422호)이 2009.2.6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성주군세조례」 또한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개정 함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분 재산세 과표구간 및 세율조정(제27조제1항제3호나목)

현 행	개 정
〈주택과표구간 및 세율〉 · 0.4억원 이하 (0.15%) · 0.4억원초과 1억원 이하 (0.3%) · 1억원초과 (0.5%)	〈주택과표구간 및 세율〉 · 0.6억원 이하 (0.1%) · 0.6억원초과 1.5억원 이하 (0.15%) · 1.5억원초과 3억원이하 (0.25%) · 3억원초과 (0.4%)

○ 현행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 산출액과 실제부과 세액간의 격차가 발생함으로
- 재산세는 과표×세율에 의거 산출된 세액으로 부과되어야하나 그동안 세부담 상한제 시행에 따라 동일과세 동일 물건에 동일 세부담이 되지 못하고
- 재산세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문제 발생

○ 산출세액이 실제 부과세액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여 구조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

3. 조례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2009. 10. 27 ~ 11. 16) : 의견없음

5. 관련법령 :지방세법 (법률 제9422호)

6.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해당없음

나. 협의사항 : 해당없음

성주군조례 호

성주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세율】 ①재산세의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2. (생 략) 3. 주택 가. (생 략)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4,000만원 이하 1,000분의 1.5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6만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억원 초과 24만원+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제27조(세율) ① ----------. 1.·2. (현행과 같음) 3. ----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 이외의 주택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1,000분의 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 3억원 초과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